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3월 03일 04시 52분



목차

목차	2
주민감사청구 절차	3
주민감사청구 절차	3

클린어수 청렴부패방지
적극행정 면책신청 상담
주민감사청구 절차

주민감사청구 절차

- 근거 :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
- 청구대상 : 당해 지자체 및 장의 권한사무중 법령위반 및 공익을 해하는 경우
- ※ 수사 및 재판관여, 개인사생활 침해, 타기관 감사사항 제외

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(감사청구서-취지이유 등)

주무부장관(시도) / 광역자치단체의장(시군구)



대표자증명서교부 (취지공표)

19세이상 주민인 경우에만 대표자 증명서 발급



서명요청 (청구인인명부작성) 시도6월,시군구3월이내 (증명서 교부일 이후)

- 19세이상 - 청구인수 이상(시군구, 읍면동 별로 작성)
-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서명일자 기재(청구인명부)



청구인명부 제출·공표 시도10일, 시군구5일이내 (서명요청 기간이 지난날부터)

- 지자체장은 대표자 성명, 주소,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 주민소, 인명부, 열람기간, 이의신청, 방법 등 공표
- 주민수 미달시 시도 5일, 시군구 3일이내 보정 요구



청구인 명부공개·열람 시군구, 읍면동

감사청구심의회(유효서명확인 등 청구요건 심사)



카기시시

(<http://www.yeosu.go.kr>)

감사결시
청구수리일로부터 60일 이내 종료

감사기간 연장 가능(정당 사유시)



감사결과 공표
(관보, 공보 등)

당해 지자체장에게 필요조치 요구(지자체장은 성실히 이행 의무)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 Web Contents



여수시